

「전북 글로벌게임센터」 2024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2차모집) 공고문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 글로벌게임센터에서 「2024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20.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내 게임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지원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30.
- 지원예산: 120,000천원
- 지원내용: (인건비) 신규 인턴 ※ 타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지원내용	- 기업별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통한 실무형 인재양성 -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4,500천원 지원(월급여 1,500천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 시, 2,000천원씩 2개월 추가 지원
지원규모	- 인턴십 지원 4명 ※ 신청기업 상근인력의 50% 인원 내 지원 가능(EX. 상근인력 5명 → 인턴지원 2명) ※ 기업 당 최대 3명
연령기준	- '전북청년기본조례' 근거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업선정	- 서면평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지원사업 모집인원 미달 시, 추후 재공고 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구분		세부내용
지원 규모	지원 내용	- 인턴십 지원 4명(기업 상근인력의 50% 이내로 지원 가능) ※ 상근인력 5명인 경우 2명 신청 가능(기업당 최대 3명으로 제한)
	지원 금액	- 인턴 1인당 총 인건비 4,500천원 지원(1,500천원 x 3개월) ※ 타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지원 기간	- 인턴 인건비 최대 3개월 책정 가능 ※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 지원
지원 대상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기업 ·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게임 기업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인턴	- [전북청년기본조례 제2조제1호] 근거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로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고등학교 재학생 참여 불가 ※ 본원의 이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피고용인), 재고용 불가 -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책정(2024년 최저임금 2,060,740원 이상) - 신규 채용 인력에 한해 인건비 지원하며, 4대보험 가입 필수 - 1차 공고일(2024. 3. 25.)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
지원조건		- 인턴 1인당 월 2,070천원 이상 지급 필수 -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가능 ※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예산항목에 한하여 지원금 2,000천원 + 자부담금 200천원 고정 편성 필수 ※ 복리후생비(사회보험부담금)를 총 사업비 내 편성 불가하므로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24년도 최저임금 2,060,740원)보다 13만원이상 추가 지급되어야 함
주요내용		- 인턴십 모집 · 기업 맞춤형 인재 모집을 통한 자체 채용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 인턴 근무현황 및 출퇴근기록 관리, 월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규직 전환 · 인턴 정규직 전환 시 2개월 추가 지원 ※ 현재 정규직 전환 지원 모집이 마감되었으나, 기존 정규직 전환 신청 인원 중 미전환 인원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의 인턴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 예정
선정방법		- 서면평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 ※ 지원사업 모집인원 미달 시, 추후 재공고 예정(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방법		- 월별보고 및 지원금 사후지급 · 월별 [인턴 인건비] 지원금 지급 현황 확인 · 신청 시 필요 서류: 인턴 출근 카드, 인턴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등

○ 자격제한대상

<신청 사항>	
-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 주관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업으로 게임 관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 상기 제한사항 외에도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사업안내서 서식 6 참조)	

○ 추진절차 및 일정

※내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공고(안)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5. 20.(월) ~ 2024. 6. 13.(목) / 25일
- (신청접수)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공고방법)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안)

- (평가일정) 2024. 6. 20.(목) 예정

- (협약체결) 2024. 7. 1.(월) 예정

※현장점검 이후 최종 선정기업 별도 연락

구분	내용
사업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5. 20.(월) ~ 2024. 6. 13.(목) 15:00까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공모 신청
서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
사전 현장점검	- 사업장 유무 및 근무환경, 수행능력 등 제반사항 점검
협약체결	- 지원사업 협약(협약체결일로부터 ~ 2024. 11. 30.) - 인턴십 지원금 교부(인턴십 1개월 급여 매월 사후 교부)
사업운영	- 진흥원 · 인턴십 지원 운영 및 현황관리 · 인턴십 지원자 근무현황 및 관리기록 관리 - 선정기업 · 프로그램 참가 인턴 매칭 고용 · 지원 사업 기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최종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 인턴 · 기업 실무업무 투입
중간점검	- 인턴십 인력 현장 점검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평가(기업 인사담당관) - 정규직 지원금 교부(정규직 1개월 급여 매월 사후 교부)
사업정산 및 종료	- 사업 마무리 및 잔액반납, 성과 관리

- 신청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업으로 게임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수행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 11. 30.까지

- 모든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은 협약기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인턴 채용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
 -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 고등학교 재학생 참여 불가
- 해당 사업으로 채용된 인턴인력이 진흥원 타 지원사업 신규인력으로 책정 및 참여 불가
-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인건비 중복수혜 불가
- 인턴채용은 최소 1개월 이상 운영(최대 3개월)
- 공고일 이후부터 채용된 인력에 한하여 신규채용 인정
- 채용 예정 인턴의 경우 협약기간 내 채용해야 하며, 기간 내 최대 3개월 인건비만 인정함
(※예시) 협약기간: '24. 5. 1.~'24. 11. 30.인 기업의 경우, 채용 예정 인턴이 3개월 근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하게 10월에 채용되었을 시, '24. 10. 1.~'24. 11. 30.(2개월)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받을 수 있음
- 인턴십 지원 인력 외근영업, 재택근무 불가
- 대표자 및 직원 친인척 채용 불가

- 사업비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금 매칭 필수(현물 불인정)
-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함
- 자부담금은 인건비로만 편성가능

(단위: 천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목	세목		지원금	자부담금	합계
인건비	보수	-인턴1(예시) · 1,500(인턴십 월급여) x 3개월 = 4,500 · 2,000(정규직 월급여) x 2개월 = 4,000	8,500	850	9,350

- ※ 인턴십 월급여는 최소 2,070천원으로 지원금(1,500천원)+자부담금(150)천원으로 구성
- ※ 정규직 월급여는 최소 2,200천원으로 지원금(2,000천원)+자부담금(200)천원으로 구성
- 사업비는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 적용이 불가

※ 사업비 관련 용어설명

- 총 사업비 : 지원금과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을 합한 금액
- 지원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재)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
- 자부담금(사업자부담금) :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 기타사항

- 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은 신청일 이후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
- 협약 이후 지원금 지급 전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 진행 예정.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사업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업 세부 사항은 「사업안내서」 및 「인턴십메뉴얼」 참조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지원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5. 20.(월) ~ 2024. 6. 13.(목) 15: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공고 및 접수기간에만 가능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공모신청(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불가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4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2차모집)” 선택
- “2024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2차모집)”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세부내용은 e나라도움 매뉴얼 참조 / e나라도움 상담센터 : 1670-9595

○ 문의처

- (사업문의) 문화콘텐츠사업팀 사업담당자
(063-214-8730, sjh2555@jcon.or.kr)
- (온라인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제출서류목록

구분	번호	제출서류	유의사항	서식
① 사업 신청 서	①	사업신청서	· 사업안내서 참조	제1호 서식 ~ 제5호 서식
	②	운영계획서		
	③	산출내역서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인턴 채용계획		
② 동의 서	①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인감 날인 필수	제 6호 서식
	②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 인감 날인 필수	제 7호 서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인력의 자필서명 필수	제 8호 서식
③ 필 수 제 출 서 류	①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②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
	③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
	④	근무자 거주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주소변경사항) 등 근무자 거주 증빙 가능한 자료	해당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것	-
	⑥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 - 직전년도('23년도) 표준재무제표 - 미제출시 서류평가 '재무안정성' 항목 기본점수 2점 부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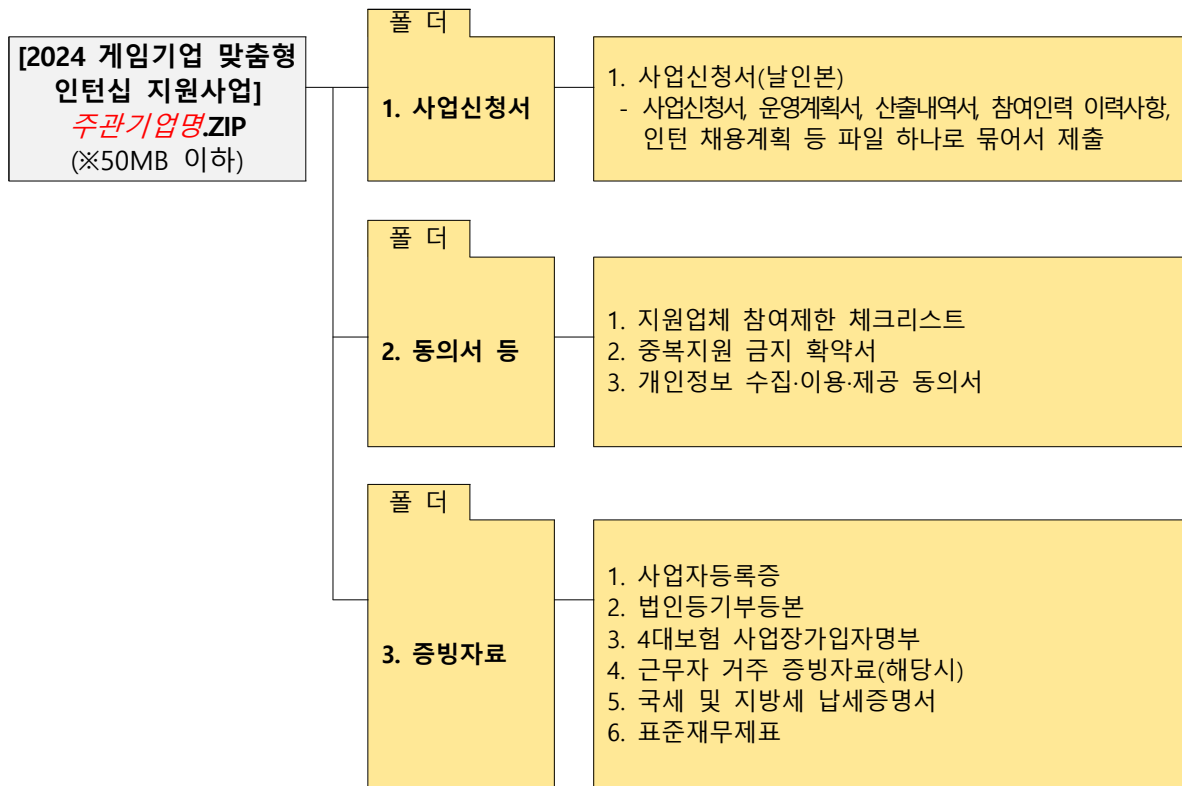
※ 누락된 서류, 파본에 대해서는 수정 파일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상기 제출서류 중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과제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상기 제출서류 목록 순서별로 편철하여 제출(서류제출방법 참조)

○ 서류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e나라도움 파일 첨부)
 - ※ 인감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제출 압축파일명 : [2024 게임기업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 주관기업명.ZIP
- 제출서류 폴더트리



5

선정방법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서면평가 (외부 심사위원)	- 평가기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운영 적절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 - 결과통보: 검토일 이후 3일 이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사전 현장점검	- 사업장 유무 및 근무환경, 수행능력 등 제반사항 점검
최종선정 및 협약	- 서면평가 및 사전 현장점검 결과 최종선정 후 협약 필요서류 제출 - 제출서류 검토 후 협약 체결

○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량 평가	재무안정성	○ 재무제표(23년도)를 통한 기업의 재무안정성 -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등을 통한 재무 안정성 파악 ☐ 유동비율 <table><tr><th>1.5점</th><th>1점</th><th>0.5점</th><th>0점</th><th>-0.5점</th></tr><tr><td>300% 이상</td><td>150% 이상 300% 미만</td><td>100% 이상 150% 미만</td><td>50% 이상 100% 미만</td><td>50% 미만</td></tr></table> ☐ 부채비율 <table><tr><th>1.5점</th><th>1점</th><th>0.5점</th><th>0점</th><th>-0.5점</th></tr><tr><td>50% 미만</td><td>50% 이상 100% 미만</td><td>100% 이상 150% 미만</td><td>150% 이상 300% 미만</td><td>300% 이상</td></tr></table> ※ 기본점수 2점(미제출) / 비율에 따른 가산제도 3점 ※ 기타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감점 또는 점수가 없을 수 있으며, 그 사항이 중대한 경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1.5점	1점	0.5점	0점	-0.5점	300% 이상	15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1.5점	1점	0.5점	0점	-0.5점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5
		1.5점	1점	0.5점	0점	-0.5점																	
		300% 이상	15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1.5점	1점	0.5점	0점	-0.5점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정성 평가	기업 마인드	○ 기업 경영 마인드 및 성장 역량의 우수성 ○ 기업만의 복지정책 보유 및 준수 여부 ○ 인턴 근무 환경 조성	20																				
	사업 적합성	○ 본 사업의 취지와 지역 인재양성의 필요성 인지 여부 ○ 인턴십 프로그램 구성의 우수성	30																				
	수행능력	○ 주요 실적 및 성과, 프로젝트 내역을 통한 기업역량 ○ 전문인력 보유와 구성의 우수성 ○ 인턴십 운영 계획 및 배치의 적합성	30																				
	운영 적절성	○ 인턴 활용 및 평가 계획에 대한 적절성 ○ 추가 성과 달성 및 기대효과	15																				
합 계			100																				

- 관련규정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과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 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에 의거함
- 진흥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안내서와 매뉴얼에 의거하여 수행함

- 일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안내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협약 이전 또는 이후에 필요할 경우 수행기관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협약해지,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은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불이익은 제출 업체에게 있음
- 사업 완료시 인턴십 운영에 따른 성과물(정규직 전환 자료, 인턴 계약서, 인턴십 평가서, 만족도 조사서 등등)은 진흥원에서 고지한 일자에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협약체결

- 동일 내용으로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비(지원금&사업자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원금을 지급 받을 별도의 신규계좌 개설 또는 잔액이 없는 계좌를 구비해야 함
- 월별보고를 통한 과제추진 및 사업비 집행점검 진행 받으며,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하는 모든 금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시, **대표이사, 임직원, 참여인력 등의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정정 평가하고 정산 시 환수함
- 참여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

- 사업자부담금 편성 및 집행

- 지원금의 10%이상 사업자부담금을 편성해야하며, 국고보조금지침 상 사업자부담금 우선집행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사업자부담금 100% 사용)
- 사업자부담금은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집행 건은 불인정 함

- 기타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은 진흥원 진행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해당 사업으로 인해 채용된 인턴에 대해선 진흥원 타 지원사업에 신규인력 책정 및 중복 지원 불가(추후 부당한 인력편성 발견 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환수 조치 예정)
- 해당 사업 신청 기업이 진흥원 입주기업일 경우, 사업 신청 시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체납 상태일 시, 지원 불가)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1.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된 경우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임직원 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지원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 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 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 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지원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제40조제1항관련)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제재조치(처리기준)
8. 제4조 제3항의 민간단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된 경우 가. 5천만 원 이상의 과제가 연 2회 이상일 경우 나. 1.5억 원 이상의 과제를 3년 연속으로 수행한 경우 다. 2년간 보조금(지원금)의 총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가. 당해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나. 향후 1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다. 향후 2년간 단체 또는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9. 기타 제재대상 사유(위반행위 유형) 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나. 수행계획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다.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다만, 지원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마.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바.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사. 지원사업을 수행한 민간단체가 해당 과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 및 권고, 지적의 조치 등의를 받거나, 사후 관리가 극히 불량인 경우 아. 그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가.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나.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다.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마. 기술료 해당액 환수 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사. 향후 5년간 보조(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아. 지원금 전액 또는 잔액 환수

※ 상기 8호, 9호의 사유별 제재 조치 및 처리는 '20년 1월 1일부로 시행. 단, 8호는 최근 2년 실적을 소급하여 적용.

※ 보조금(지원금)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칭하는 모든 성격의 재원을 뜻함. (단, 8호에 한하여 칭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진흥원이 직접 지원한 보조금에 한함.)